

##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입 법 예 고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행정절차법 제41조」,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6. 2. 10.

### 하동군의회 의장 강 대 선

1. 조례명: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안이유

- 하동군 관내 파크골프장에 대한 군민 수요 증가와 동호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외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및 연회원 제도를 조정함으로써 군민 편의 증진에 기여
- 이용료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도모

#### 2. 재입법예고 사유

- 기존 입법예고 (2026. 1. 21. ~ 2. 2.)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항과 경로우대 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이 추가되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알리고자 함.

### 3. 주요내용

- 하동군민만 연회원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함.  
(안 제3조제3항, 안 별지 1호 서식)
-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에 대한 이용료 감면(50%) 사항을 추가함.  
(안 제6조제2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외 일일이용자에 대한 하동사랑상품권 환급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시설이용 제한 사유로 예약당일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예약부도)를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경고 및 30일 입장 제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하동군민 외 이용자에 대해 일일이용료를 인상(4,000원→7,000원)하고 연회원(개인/단체) 제도를 폐지함.(안 별표 1)
- 하동군민 외 일일이용료에 대한 하동사랑상품권 환급 기준 및 방법에 사항을 별표로 신설함.(안 별표 2)
- 하동군민 외 일일이용료 개정 및 상품권 환급 신설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하동군민 외 연회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bcfarc@korea.kr](mailto:bcfarc@korea.kr)

-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하동군민으로 연회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를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용료의 환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외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 대상에서 제6조에 따른 감면자 및 별표 1에 따른 연회원은 제외한다.

제10조의 제목“(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대해”를 “대해 경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예약 당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경고를 총 3회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30일간 제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하동군 파크골프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하동군민	하동군민 외	이용시간
일일 이용자(개인)	2,000	7,000	1일 4시간 이내
연회원(개인)	120,000	해당없음	
연회원(단체)	60,000		
1. “일일 이용자”란 1회 이용료를 납부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회원”이란 별지 서식에 따라 연회원 신청을 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1년 단위의 이용자를 말한다. 3. “하동군민”이란 주민등록상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 회원 등록된 하동군파크골프협회 가맹 클럽을 말한다. 5.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7. 연도 중에 연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이용료를 수납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 파크골프장 이용료 환급 기준 및 방법(제6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환급대상자	환급금액	환급방법
1일 1회 기준	관외 일일이용자	3,000	하동사랑상품권

※ 비고

하동사랑상품권 환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환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하동군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동군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개인□ 단체□)**

성 명		성 별	남 / 여		
단 체 명		대 표 자		대표자 확인	
주 소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		연 락 처			
이용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납부금액	금	원	납부확인		
20 년 월 일					
「하동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하동군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b>하동군수 귀하</b>					
<b>【 하동군 파크골프장 이용 기준 】</b>					
1. 연회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2. 연회원 등록 후 발급받은 등록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이용 시간은 1일 1회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연회원 신청서 작성 시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연회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하동군민 외 일일이용자의 이용료 개정 규정과 제6조의2(이용료의 환급)의 신설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하동군민 외 연회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회원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이용신청 및 승인)</p> <p>① ~ ② (생략)</p> <p>③ 연회원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u>하동군민으로 연회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u></p> <p>④ ~ ⑥ (생략)</p> <p>제6조(이용료의 감면)</p> <p>① (생략)</p> <p>1. ~ 2. (생략)</p> <p>② 그 밖에 연회원 이용료 및 일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을 <u>준용한다.</u></p> <p>③ ~ ④ (생략)</p> <p><u>&lt;신 설&gt;</u></p>	<p>제3조(이용신청 및 승인)</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이용료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준용하며, 이 경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도 포함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2(이용료의 환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외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u></p>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그 밖에 시설 이용에 대해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신설>

료의 일부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 대상에서 제6조에 따른 감면자 및 별표 1에 따른 연회원은 제외한다.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고,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예약 당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사람

8. ----- 대해 경고,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경고를 총 3회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30일간 제한한다.